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5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윤후덕・김정호・정준호

박희승 • 이훈기 • 이연희

정성호 · 이학영 · 김영배

박 정ㆍ이병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 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 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5장에 제9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지위
	를 이용하여 제92조, 제92조의2
	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
	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
	<u>다.</u>